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942
----------	------

2024년 6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4. 5. 27.
- 제안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 회부일자 : 2024. 5. 30.
- 상정일자 :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24. 6.19)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2024. 6.24)
 - 승인

Ⅱ. 제안설명의 요지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후 예비비 지출 결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43조,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비비는
 - 161억원을 사용결정하여 153억원을 집행하였음
 -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3억원이며, 5억원이 집행잔액임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1. 제안경위

-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4년 5월 27일 제출한 것으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개요¹⁾

- '23회계연도 예비비는 200억원을 편성하여 160억 7,200만원을 사용결정하고, 152억 7,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6,000만원을 이월하였음

〈표 3-1〉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사용결정액(A)	지출액(B)	이월액(C)	집행잔액(A-B-C)
20,000	16,072	15,277	260	534

3. 예비비 지출 관련 검토

가. 예비비 일반현황

(1) 예비비 편성

- 1) ■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천원 단위로 작성되나 검토보고서의 경우,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
- 증감률 등의 경우, 소수점 1자리까지 표기하고, 그 미만은 절사함에 따라 일부(±0.1% 범위 내) 차이 있음

- 예비비는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고,
 - 예비비의 편성규모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일반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이와는 별도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서울시교육청은 '23회계연도에 일반예비비 100억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0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표 3-2〉 예비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본 예산	추경 예산		증감액	최종예산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합	계	20,000	-	-	-	20,000
일반예비비		10,000	-	-	-	10,000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000	-	-	-	10,000

(2) 예비비 지출

- 한 회계연도 동안 지출된 예비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 안건으로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고,
 -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난 '16년 7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부터 별도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 분기별 예비비 지출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고 있음
- '23회계연도 결산결과, 예비비 200억원에 대해 25건, 160억 7,200만원을 사용결정하여 152억 7,700만을 지출한 것으로 제출됨

〈표 3-3〉 최근 3년간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A)	사용결정		지출액 (C)	다음연도 이월액 (D)	집행잔액 (B-C-D)
		건수	금액 (B)			
2 0 2 3	20,000	25	16,072	15,277	260	534
2 0 2 2	40,000	35	16,557	14,981	1,359	216
2 0 2 1	11,220	19	5,657	2,850	2,576	229

○ **일반예비비**는 '23회계연도 예비비 사용결정액(160억 7,200만원)중 17건, 130억 5,300만원(81.2%)인 것으로 제출된 바,

- 민사소송(가칭 노이초 부지 환매권)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2차)을 포함한 **교육사업비** 7건은 일반예비비중 102억 2,100만원을 사용결정하고, 99억 4,2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제출됨
- 아울러 서이초 모듈리 및 연결통로 차양설치를 포함한 10건의 **시설사업비**에 대해 일반예비비 28억 3,200만원을 사용결정하여 26억 8,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제출됨

〈표 3-4〉 일반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사용결정		지출액	사고이월액	집행잔액
	건수	금액			
일반예비비	17	13,053	12,622	-	431
교육사업비	7	10,221	9,942	-	278
시설사업비	10	2,832	2,680	-	152

〈표 3-5〉 일반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소관부서	사 업 명	사 용 결정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D=A- B - C)
합 계 (17 건)			13,053	12,622	-	431
교 육 사 업 비 (7 건)			10,221	9,942	-	278
	교육재정과	민사소송(가칭 노이초 부지 환매권) 패 소 에 따 른 손 해 배 상 (2 차)	8,978	8,702	-	275
	교육재정과	민사소송(가칭 노이초 부지 환매권) 패 소 에 따 른 손 해 배 상	758	755	-	3
	교육재정과	학교용지 공급계약 관련 민사소송	406	405	-	-
	교 육 시 설 관 리 본 부	민사소송 확정에 따른 기동보수반 퇴 직 금 및 지 연 손 해 금 지 급	50	50	-	-
	강 남 서 초 교 육 지 원 청	신 구 초 복 합 시 설 행 정 소 송 에 따 른 변 호 사 착 수 금 지 원	12	12	-	-
	동 작 관 악 교 육 지 원 청	직위해제 처분 취소에 따른 자연손해금 지급	12	12	-	-
	초 등 교 육 과	장 계(정작3월) 처분 취소에 따른 자연손해금 지급	2	2	-	-
시 설 사 업 비 (10 건)			2,832	2,680	-	152
	강 남 서 초 교 육 지 원 청	서이초 모듈러 및 연결통로 차양 설치	969	948	-	20
	동 작 관 악 교 육 지 원 청	서울공고 수변전설비 용량증설공사	466	420	-	45
	성 북 강 북 교 육 지 원 청	길음중 본관동 노후냉난방개선	360	340	-	19
	북 부 교 육 지 원 청	공연초 병설유 신설공사비 부족분 지원	243	243	-	-
	교 육 시 설 관 리 본 부	학생교육원 4영지 화장실동 석축 보수공사	200	191	-	8
	교 육 시 설 관 리 본 부	양천도서관 파라펫 및 치장벽돌 개선공사	177	177	-	-
	서 부 교 육 지 원 청	서울용강초 수배전반 용량증설공사	172	138	-	33
	성 동 광 진 교 육 지 원 청	서 울 경 동 유 치 원 옥 상 방 수	100	77	-	22
	강 남 서 초 교 육 지 원 청	언북초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개선 공사(정문및후문개선공사)	98	96	-	1
	성 동 광 진 교 육 지 원 청	용곡중 앞 일반재산 슬라브 철 거 및 옹 벽 설 치 공 사	46	45	-	1

-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8건, 30억 1,800만원(18.7%)을 사용결정하여 26억 5,500만원을 지출하였음

〈표 3-6〉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사 용 결 정		지 출 액	사 고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건	수 금 액			
재해·재난목적예비비		8	3,018	2,655	260	102
	교육사업비	1	125	125	-	-
	시설사업비	7	2,893	2,529	260	102

- **교육사업비**의 경우, 제주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귀가지연교에 대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중 1억 2,500만원을 사용결정하여 전액 지출하고, **시설사업비**의 경우에는 영상고 기숙사 화재 피해 복구 등 7건에 대해 28억 9,300만원을 사용결정하여 25억 2,9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제출함
- 다만, 재해·재난목적예비비중 사용결정된 (방일초)집중호우 대비 안전 위해 **요소 개선공사**의 경우, 사용결정된 재해·재난목적예비비(4억 9,000만원) 중 53.1%, 2억 6000만원을 이월시킨 것으로 확인됨

〈표 3-7〉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부 서	사 업 명	사 용 결정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D=A- B - C)
합 계 (8 건)			3,018	2,655	260	102
교육 사업비 (1 건)			125	125	-	-
	체 육 건 강 예 술 교 육 과	제 주 도 소 규 모 테 마 형 교 육 여 행 귀 가 지 연 교 추 가 경 비 지 원	125	125	-	-
시설 사업비 (7 건)			2,893	2,529	260	102
	교 육 시 설 관 리 본 부	영 상 고 기 숙 사 화 재 피 해 복 구	1,294	1,294	-	-
	성 동 광 진 교 육 지 원 청	광 남 고 교 사 동 화 재 복 구	608	552	-	55
	강 남 서 초 교 육 지 원 청	방 일 초 집 중 호 우 대 비 안 전 위 해 요 소 개 선 공 사	490	229	260	-
	교 육 시 설 관 리 본 부	영 란 여 중 교 사 동 옥 상 방 수 공 사	172	172	-	-
	서 부 교 육 지 원 청	연 천 중 체 육 관 외 벽 개 선	153	116	-	37
	강 남 서 초 교 육 지 원 청	서 초 중 본 관 및 신 관 베 란 다 방 수 공 사	125	118	-	6
	강 남 서 초 교 육 지 원 청	연 남 초 교 사 동 외 벽 방 수 및 누 수 피 해 복 구	49	46	-	3

나.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검토

(1)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위반 사안

- 서울시교육청은 예비비 200억원중 160억 7,200만원을 사용결정하여 152억 7,700만원을 지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출한 것임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승인요청한 '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예비비 지출결과에 대한 승인여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서울시교육청의 '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과, 일반예비비는 예산액 100억원보다 30.5% 초과한 130억 5,300만원을 사용결정하고, 126억 2,200만원을 지출한 바,
 - 예비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①일반예비비와 ②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편성하되 ①일반예비비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여 '23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예산총액(12조 8,915억 2,100만원)의 0.08%, 100억원을 편성한 것임
 - 특히, 관련 법령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 하도록 정하고 있어 ①일반예비비 예산액은 우리 시의회가 의결한 100억원임에도 ①일반예비비 지출결과 배정된 예산액 100억원보다 30.5% 초과한 130억 5,300만원을 사용결정한 것은 배정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결정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안으로 판단됨
-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관련 기준중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는 ①일반예비비와 ②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원가통계목을 상호구분하고 있는 바,

- ①일반예비비와 ②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이른바 ‘재원간 칸막이’로 구분하고 있어 원가통계목간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없이 당초 편성된 ①일반예비비 예산액 100억원을 모두 지출한 이후부터는 개별 예비비 사용요구건에 대해 ②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부터 예산의 변경사용을 통해 ①일반예비비 재원을 추가 확보한 이후 개별 예비비 건에 대해 사용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①일반예비비 편성액을 초과하여 사용결정은 물론 지출까지 마친 이후 회계연도종료에 임박한 '23년 12월 21일 마치 ‘장부 정리’ 하듯이 ②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부터 35억원을 ①일반예비비로 변경함으로써 회계상 초과지출이 없는 것으로 정리한 것은 관련 법령은 물론 회계질서를 경시한 결과로 판단됨

〈표 3-8〉 예비비 예산의 변경사용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기 지 출 액	(변경 전) 예 산 잔 액	변 경 요 구 액		(변경 후) 예 산 잔 액
					감	증	
합	계	20,000	16,072	3,927	3,500	3,500	3,927
일	반 예 비 비	10,000	13,053	△3,053		3,500	446
재	해 · 재 난 목 적 예 비 비	10,000	3,018	6,981	△3,500		3,481

- 따라서 배정된 ①일반예비비 예산액을 초과하여 사용승인하고, 회계연도말 원가통계목간 재원이동을 위해 ②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부터 35억원을 변경한 것은 회계질서 문란 사례로 판단되어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요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2) 사고이월로 인한 예비비의 이월사례 지양

- '23회계연도 예비비 사용결정액(160억 7,200만원)중 사고이월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서 1건, 2억 6,000만원이 발생된 바,

〈표 3-9〉 예비비 사고이월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부서	사업명	사용결정		지출액	사고이월액	집행잔액
		금액	사용결정일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방일초 집중호우 대비 안전 위해요소 개선공사	490	'23. 8. 1	229	260	-

- 방일초 집중호우 대비 안전 위해요소 개선공사는 '23년 8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억 9,000만원이 사용결정된 것이나, 2억 2,9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6,000만원을 사고이월한 것으로 제출됨

- 동 사업 예비비 지출사례는 ①'23년 8월부터 9월까지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②'23년 11월부터 '24년 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여, ③'23년 9월부터 '24년 9월까지 용역을 계속관리할 예정으로 공사 및 용역비 일부(2억 6,000만원)를 사고이월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시급성'을 고려하여 예비비 지출을 결정한 사안이나 사용결정된 예비비중 53.1%가 이월된 것으로
- 행정안전부의 관련 기준은 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예비비 지출과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예비비 지출은 지양하도록 정하고 있어, 동 예비비 지출 사례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예비비 지출의 내재적 제약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동 사업은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당해연도 이행 가능한 사업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연도 말에 사고이월하는 것은 예비비 운용 취지에 부적합한 것인 바,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 학교회계 전출을 통한 이월액 발생규모 착시 사례 지양

- 예비비 사용결정 내역 중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배정된 사업은 4건, 16억 500만원이나, 학교에서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한 사업은 1건, 12억 9,4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됨

〈표 3-10〉 예비비 중 학교회계전출금 배정 내역

(단위 : 건, 백만원)

사업부서	사업명	사 용 결 정		
		금 액	사용결정일	집 행 잔 액
합 계		1,605	-	1
체육건강 예술교육과	제주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귀가지연교 추가 경비 지원	125	'23. 5.19	1
교육시설 관리본부	영란여중 교사동 옥상방수 공사	172	'23. 8. 2	0
교육시설 관리본부	영상고 기숙사 화재 피해 복구	1,294	'23.12. 1	0
강남서초 교육지원청	신구초 복합시설 행정소송에 따른 변호사 착수금 지원	12	'23.12.19	0

- **영상고 기숙사 화재 피해 복구 사업**은 '23년 9월, 영상고 기숙사 화재로 인하여 '23년 12월 6일, 예비비 사용결정 후, 12억 9,4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제출하였으나,

〈표 3-11〉 예비비 사고이월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부서	사업명	사 용 결 정			실제 학교회계 사용현황	
		금 액	사용결정일	집행잔액	이 월 액	공사예정 기간
교육시설 관리본부	영상고 기숙사 화재 피 해 복 구	1,294	'23.12. 1	0	1,294	'24. 5.~7.

- 사용결정 된 예비비 전액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배정되어 배정액 전액이 이월되었고 '24년 5월 현재까지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동 사업은 '24년 1월부터 4월까지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4년 5월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24년 5월부터 7월까지 공사에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사용결정된 예비비 전액이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전액 이월 되었음에도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배정되어 교육청 예비비 사용명세서 상으로는 이월이 발생되지 않은 것처럼 착시현상을 유발한 사례로 사료됨
- 동 예비비 지출사례와 같이 회계연도 종료에 임박한 학교회계 전출의 경우에는 설계용역 등 최소한의 예비비를 지출하고, 다음연도 본예산에 소요 재원을 편성하는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요건 충족 검토 철저

- 예비비 사용결정 내역 중 5,000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은 2건, 3억 3,000만원으로 확인된 바,

〈표 3-12〉 집행잔액 발생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사 용 결 정		지 출 액	사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사용결정일			
합 계		9,586	-	9,254	-	330
교육재정과	민사소송(가칭 노이초 부지 환매권 관련)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2차)	8,978	'23. 5.11	8,702	-	275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광 남 고 교 사 동 화 재 복 구	608	'23. 7.14	552	-	55

※ 집행잔액 5,000만원 이상 사업내역에 한함

- **민사소송(가칭 노이초 부지 환매권 관련)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2차)**은 가칭 노이초 부지 환매권과 관련된 민사소송 건으로 1건은 패소하였고 잔여사건(5건)도 모두 화해권고결정되어 조기종결된 바, 손해배상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89억 7,800만원을 사용결정하고 87억 2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됨
 - 불필요한 추가 분쟁을 예방하고 손해배상액의 법정 이율(12%)의 지연이자 발생에 따른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판결선고 직후 빠른 시일내에 지급함에 따라 당초 사용결정액(89억 7,800만원)중 87억 200만원이 지출되고 2억 7,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광남고 교사동 화재복구**는 광남고 교사동에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발생으로 교실 4개가 사용불가하여 '23년 7월, 예비비 6억 800만원을 사용결정하고 5억 5,2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된 바,
 - '23년 7월, 공사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2,000만원)이 발생하였고, '23년 8월까지 건축 및 전기공사를 실시한 후 준공정산금(3,500만원)이 발생하여 5,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예비비를 지출하는 경우라 하여도 예비비 예산의 총량은 한정되어 있고, 예비비에서 사용결정된 예산중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다시 예비비로 환원 사용할 수 없어 다른 긴급한 사업의 지출 요구를 무산시킬 수 있으므로 예비비의 신청과 사용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 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승인(2024. 6.24)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안 번호	1942
----------	------

제출연월일 : 2024년 5월 27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후 예비비 지출 결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43조,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고자 함

2. 예비비 지출내역

가. 지출내역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등 8개 사업, 총 25건

(단위 : 천원)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 출 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20,000,000	16,072,668	15,277,768	260,812	534,088	

나. 세부내역 :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 참조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천원)

연번	부서/기관	지출결정일	사업내용	세부사업	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1	강남서초교육지원청	2023-01-20	연북초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개선공사 (정문및후문개선공사)	학교시설환경개선	건설비	98,000	96,446	0	1,554
2	초등교육과	2023-01-31	징계(정직3월) 처분 취소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	교원인건비	보전금	2,515	2,515	0	0
3	교육재정과	2023-01-31	민사소송(가칭 노이초 부지 환매권 관련)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	공유재산및물품관리	보전금	758,673	755,502	0	3,171
4	교육시설관리본부	2023-03-03	양천도서관 파라펫 및 치장벽돌 개선공사	기관시설유지관리	건설비	177,000	177,000	0	0
5	북부교육지원청	2023-03-06	공연초 병설유 신설공사비 부족분 지원	학교신증설	건설비	243,628	243,628	0	0
6	동작관악교육지원청	2023-03-07	서울공고 수변전설비 용량증설공사	학교시설환경개선	건설비	466,000	420,315	0	45,685
7	성동광진교육지원청	2023-03-09	서울경동유치원 옥상방수	학교시설환경개선	건설비	100,000	77,412	0	22,588
8	성북강북교육지원청	2023-04-11	길음중 본관동 노후냉난방개선	학교시설환경개선	건설비	360,100	340,335	0	19,765
9	교육시설관리본부	2023-05-04	학생교육원 4명지 화장실동 석축 보수공사	기관시설유지관리	건설비	200,000	191,659	0	8,341
10	서부교육지원청	2023-05-04	서울용강초 수배전반 용량증설공사	학교시설환경개선	건설비	172,000	138,592	0	33,408
11	교육재정과	2023-05-11	민사소송(가칭 노이초 부지 환매권 관련)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2차)	공유재산및물품관리	보전금	8,978,189	8,702,821	0	275,368
12	체육건강문화예술과	2023-05-19	제주도 소규모태마형교육여행 귀가지연구 추가 경비 지원	학생단체활동	학교회계전출금	125,515	125,514	0	1
13	서부교육지원청	2023-06-02	연천중 체육관 외벽개선	학교시설환경개선	건설비	153,760	116,051	0	37,709
14	교육재정과	2023-06-26	학교용지 공급계약 관련 민사소송(항소심)	공유재산및물품관리	운영비	406,000	405,915	0	85
15	성동광진교육지원청	2023-07-14	광남고 교사동 화재 복구	학교시설환경개선	건설비	608,016	552,346	0	55,670
16	동작관악교육지원청	2023-07-26	직위해제 처분 취소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	교원인건비	보전금	12,664	12,664	0	0
17	강남서초교육지원청	2023-08-01	방일초 집중호우 대비 안전 위해요소 개선공사	학교시설환경개선	건설비	490,000	229,174	260,812	14
18	강남서초교육지원청	2023-08-01	서초중 본관 및 신관 베란다 방수공사	학교시설환경개선	건설비	125,000	118,643	0	6,357
19	교육시설관리본부	2023-08-02	영란여중 교사동 옥상방수 공사	학교시설환경개선	학교회계전출금	172,500	172,500	0	0
20	강남서초교육지원청	2023-08-11	연남초 교사동 외벽방수 및 누수 피해복구	학교시설환경개선	건설비	49,318	46,109	0	3,209
21	강남서초교육지원청	2023-08-25	서이초 모듈러 및 연결통로 차양 설치	학교시설환경개선	건설비	969,000	948,770	0	20,230
22	교육시설관리본부	2023-10-13	민사소송 확정에 따른 기동보수반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시설사업운영	보전금	13,382	13,382	0	0
					민간이전	36,906	36,905	0	1
23	성동광진교육지원청	2023-11-23	용곡중 앞 일반재산 슬라브 철거 및 옹벽 설치 공사	공유재산및물품관리	건설비	46,828	45,896	0	932
24	교육시설관리본부	2023-12-01	영상고 기숙사 화재 피해 복구	학교시설환경개선	학교회계전출금	1,294,764	1,294,764	0	0
25	강남서초교육지원청	2023-12-19	신구초 복합시설 행정소송에 따른 변호사 착수금 지원	법무관리	운영비	3,410	3,410	0	0
					학교회계전출금	9,500	9,500	0	0
합 계 (총 25건)						16,072,668	15,277,768	260,812	534,088